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사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동장에게 위임한 일부 사무중 법령의 폐지 또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 제1조)

가) 동장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함.

- 인장업법 폐지(법률 제5649호, 1999. 1. 21)에 따른 인장업에 관한 영업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1호)

나) 건축물 신고의 수리중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에서 85㎡로 변경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에서 100㎡로 변경(제5조제1항제3호)

다) 동장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50㎡(단독주택인 경우에 100㎡) 이하인 건축,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수리(제5조제1항제3호)
-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제5조제1항제4호)
-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5호)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6호)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중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록증 교부,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제5조제1항제15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자격증명 발급(제5조제1항제16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19호)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의 개정(안 제2조)

가) 명예반장의 동장임명을 삭제한다(제6조)

나) 통·반장회의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회의개최를 동장이 하는 것중 당산제1동, 대림제1동은 구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2조)
-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안 제4조)
 - (가) 동장의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증명 발급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16조)
-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징수조례의 개정(안 제5조)
 - (가)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위임중 당산제1동,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9조)
-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안 제6조)
 - (가) 동장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점검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21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당산1동, 대림1동)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오던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치로 관련되는 개별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 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별표> 위임사무중 수입기관이 동장으로 된 내용에서 당산1동장, 대림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법령 개·폐에 따른 일부 관련규정 정비로 건축신고의 수리내용 변경 및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 등 각 개별조례에서 규정된 동장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하여 시범동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과 통·반장설치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명예반장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한 조례정비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중 “당산제1동, 대림제1동은 구청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한 개정안은 동행정 운영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3항 단서중 “동장(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구청장)”을 “동장”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사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동장에게 위임한 일부 사무중 법령의 폐지 또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 제1조)

가) 동장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함.

- 인장업법 폐지(법률 제5649호, 1999. 1. 21)에 따른 인장업에 관한 영업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1호)

나) 건축물 신고의 수리중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에서 85㎡로 변경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에서 100㎡로 변경(제5조제1항제3호)

다) 동장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50㎡(단독주택인 경우에 100㎡) 이하인 건축,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수리(제5조제1항제3호)
-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제5조제1항제4호)
-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5호)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6호)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중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록증 교부,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제5조제1항제15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자격증명 발급(제5조제1항제16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19호)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의 개정(안 제2조)

가) 명예반장의 동장임명을 삭제한다(제6조)

나) 통·반장회의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회의개최를 동장이 하는 것중 당산제1동, 대림제1동은 구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중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2조)
-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안 제4조)
 - (가) 동장의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증명 발급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16조)
-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징수조례의 개정(안 제5조)
 - (가)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위임중 당산제1동, 대립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9조)
-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안 제6조)
 - (가) 동장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점검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21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당산1동, 대립1동)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오던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치로 관련되는 개별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 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별표> 위임사무중 수입기관이 동장으로 된 내용에서 당산1동장, 대립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법령 개·폐에 따른 일부 관련규정 정비로 건축신고의 수리내용 변경 및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 등 각 개별조례에서 규정된 동장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하여 시범동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과 통·반장설치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명예반장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한 조례정비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중 “당산제1동, 대립제1동은 구청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한 개정안은 동행정 운영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3항 단서중 “동장(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구청장)”을 “동장”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 조례</p> <p>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p> <p>②명예반장은 관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p> <p>제8조(반상회) ①생략</p> <p>②생략</p> <p>③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p> <p>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p>	<p>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 조례</p> <p>제6조(원안과 같음)</p> <p>제8조(반상회) ①(원안과 같음)</p> <p>②(원안과 같음)</p> <p>③.....</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p> <p>제2조(지도위원의 위촉)</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중 '1.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삭제하고 사무명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5. 용벽등 공작물 축조의 신고', '6.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의 수

리', '1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수입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

“3. 건축신고의 수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3. 건축신고의 수리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나. 대수선 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 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인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p>	<p>건축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p>	<p>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p>
---	---	----------------------------------

사무명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수입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단 가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을 제외)

사무명 “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의 수리”의 ‘수입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

제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에 “동장(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구청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관할동장”을 “관할동장(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 조례</p> <p>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p> <p>②명예반장은 관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하 다.</p> <p>제8조(반상회) ①생략 ②생략 ③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 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u>동장</u> (<u>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구청장</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p> <p>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p> <p>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 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 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한다.</p>	<p>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 조례</p> <p>제6조(원안과 같음)</p> <p>제8조(반상회) ①(원안과 같음) ②(원안과 같음) ③..... <u>동장</u>.....</p> <p>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p> <p>제2조(지도위원의 위촉)</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장에게 위임한 일부사무중 법령의 폐지 또는 등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 제1조)

1. 동장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함.

- (1) 인장업법 폐지(법률 제5649호, 1999. 1. 21)에 따른 인장업에 관한 영업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1호)
2. 건축물 신고의 수리중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에서 85㎡로 변경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에서 100㎡로 변경(제5조제1항제3호)
3. 동장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함.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중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50㎡(단독주택인 경우에 100㎡) 이하인 건축,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중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수리(제5조제1항제3호)
 - (2)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제5조제1항제4호)
 - (3)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5호)
 - (4)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6호)
 - (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중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록증 교부,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제5조제1항제15호)
 -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자격증명 발급(제5조제1항제16호)
 - (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제5조제1항제19호)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의 개정(안 제2조)

- (1) 명예반장의 동장임명을 삭제한다(제6조)
- (2) 통·반장회의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회의개최를 동장이 하는 것중 당산제1동, 대림제1동은 구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안 제3조)

- (1)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2조)

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안 제4조)

- (1) 동장의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증명 발급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16조)

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안 제5조)

(1)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위임중 당산제1동,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9조)

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안 제6조)

(1) 동장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점검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행자부 '99. 5. 31)

나. 합의사항 : 없음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개정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중 '1.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삭제하고 사무명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5. 옹벽등 공작물 축조의 신고', '6.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의 수리', '1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수임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3. 건축신고의 수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3. 건축신고의 수리</p> <p>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p> <p>나. 대수선</p> <p>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p> <p>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인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p>	<p>건축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p>	<p>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p>
---	---	----------------------------------

사무명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수임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단 가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사무명 “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의 수리”의 ‘수입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제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에 “동장”을 “동장(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관할동장”을 “관할동장(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별표]			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1.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인장업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신고의 수리	인장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장	1. (삭제)	(삭제)	(삭제)
3. 건축신고의 수리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신 (신설)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건축 다.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동장	3. 건축신고의 수리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건축 다.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9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동 장 (단, 당산제 1동장, 대림제 1동장은 제외)
4.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동장	3.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제4호와 같음)	동 장 (단, 당산제 1동장, 대림제 1동장은 제외)
5.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1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동장	4.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 제5호와 같음)	동 장 (단, 당산제 1동장, 대림제 1동장은 제외)
6.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27조	동장	5.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 제6호와 같음)	동 장 (단, 당산제 1동장, 대림제 1동장은 제외)
1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나.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증 교부 라.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폐업신고 마.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취소 등	음반및비디오에관한 법률 제7조 음반및비디오에관한 법률 제9조 음반및비디오에관한 법률 제10조 음반및비디오에관한 법률 제11조 음반및비디오에관한 법률 제12조	동장	14. (현행 제15호와 같음) 가. (현행 제15호와 같음) 나. (현행 제15호와 같음) 다. (현행 제15호와 같음) 라. (현행 제15호와 같음) 마. (현행 제15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 장 (단, 당산제 1동장, 대림제 1동장은 제외)

현행			개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나. (생략) 다. 농지자격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동장	16.(현행 제17호와 같음) 가. (현행 제17호와 같음) 나. (현행 제17호와 같음) 다. (현행 제17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단, 가목, 다목에 대하여는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
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동장	18.(현행 제19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단, 당산제1동장, 대립제1동장은 제외)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관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제8조(반상회) ①(생략) ②(생략) ③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단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제6조(명예반장) (삭제) 제8조(반상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동장(당산제1동, 대립제1동장은 구청장).....

